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내 허용행위를 완화하고, 어선의 안전과 관련된 위반행위의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

3. 주요내용

가.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

- 1)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‘사설묘지’, ‘자연장지’, ‘수력 발전시설(양식장의 배출수를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)’의 설치를 허용

나. 총허용어획량(TAC) 배분량의 할당기준

- 1) TAC 배분량을 할당할 경우 「어선안전조업법」의 위반전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

다. 수산자원관리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

- 1) ‘수산자원관리위원회’가 ‘수산조정위원회’로 통폐합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 및 삭제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수산업법」 제95조에 따른 시·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22조제1호 중 “「수산업법」”을 “「수산업법」, 「어선안전조업법」”으로 한다.

제43조 및 제4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16 제2호하목 중 “것”을 “시설,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묘지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연장지(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호 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버. 태양광·풍력·수력 발전시설(수력 발전시설은 양식장의 배출수를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

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”를 “「수산업법」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1조(시·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거나 그 계획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	제21조(시·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법 제54조에 따른 시·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	2. 「수산업법」 제95조에 따른 시·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2조(배분량의 할당기준 등) 시·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(이하 “업종별수협”이라 한다) 또는 어업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자에게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	제22조(배분량의 할당기준 등) 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단체장으로부터 소속 어업자별
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할당할
수 있다.

1. 이 법 또는 「수산업법」의
위반 전력

2. ~ 4. (생략)

제43조(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)

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
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(이하
“중앙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
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
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
시·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(이하
“시·도위원회”라 한다)는
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
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
구성한다.

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
수산부차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
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단에 속
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
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
며,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
의 사람이 된다.

1. 국립수산과학원 고위공무원

-----.

1. ----- 「수산업법」,
「어선안전조업법」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- 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
구직공무원 중 국립수산과학
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
2. 공단의 임직원 중 공단의 이
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
3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
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
상임이사 중 수산업협동조합
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
명
4.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
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
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
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
5. 시·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
지역 어업인 중 성별을 고려
하여 시·도지사가 추천하는
사람 11명 이내
- ③ 시·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
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, 부위
원장은 시·도의 3급 공무원, 4
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
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시·도
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,
그 밖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
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 또

는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.

1. 관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

및 업종별수협의 조합장(업종
별수협의 조합장이 없는 경우
에는 조합원이나 어업인을 대
표하는 사람) 중 시·도지사
가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

2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

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후
계어업경영인 중 시장·군수
·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
명 이내

3. 어촌계장 중 지구별수협의

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
이내

4. 「수산업법」에 따른 면허·

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
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 시
·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3
명 이내

5. 수산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

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·도
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이
내

④ 제2항제4호 및 제5호, 제3항

각 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

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⑤ 중앙위원회 및 시·도위원회 (이하 “각 위원회”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수산자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.

⑥ 각 위원회에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43조의2(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) ① 제43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 위원을 지명 또는 추천하거나 위촉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

<삭 제>

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②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·도 위원회 위원을 지명 또는 추천하거나 위촉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533